**물품 공급 계약서**

[ ]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[ ]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은 당사자 사이의 물품의 계속적 공급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공급계약(이하 “본 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다 음

**제1조(목적)**

본 계약은 “갑”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물품을 “을”에게 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계약의 효력)**

본 계약은 제3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동안 “갑” 과 “을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품공급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계약이다. 다만,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상호 합의하여 정한 개별주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본 계약의 내용과 모순 또는 충돌되는 경우 개별주문서 기재사항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.

**제3조(계약기간)**

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거절 또는 수정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계약목적물)**

본 계약에 기하여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“갑”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[ ]제품으로 하고, 구체적인 물품의 종류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주문서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.

**제5조(공급물량 및 가격)**

“갑”이 “을”에게 공급하는 [ ]제품의 물량 및 가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, 물품의 수량 및 단가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주문서에 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.

**제6조(대금지급)**

“을”은 매월 말 세금계산서 발행 후 ( )일 이내에 “갑”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. 단,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할 경우 그 만기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( )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대금지급 지체시 개별주문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“을”은 대금지급일(어음교부시에는 만기일) 다음날부터 지급을 지체한 물품대금에 대한 연12%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.

**제7조(주문)**

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, 규격, 수량, 단가, 주문일, 납품일, 납품장소, 대금지급 수단 및 조건을 “갑”과 사전 합의한 후 그에 따라 확정된 거래조건을 명시한 개별주문서를 “갑”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물품의 공급을 주문하며, 그러한 주문은 최소 납품기일 [ ]일전에 이루어져야 한다.

**제8조(납품)**

“갑”은 개별주문서에 명시된 납품일에 “을”이 주문한 상품을 “을”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“갑”은 개별주문서 수령 후 해당 납품일에 해당 주문품을 공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“을”에게 통지함으로써 납품일을 [ ]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.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운송비용은 “갑”이 부담한다.

**제9조(물품의 하자)**

①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지체없이 “갑”이 공급한 물품의 파손, 오손, 변경, 규격불량, 수량부족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“을”의 하자통지일로부터 [ ]일 내에 하자 있는 물품을 정상품으로 교체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이 전항의 하자통지를 지체하였을 경우 “을”은 대체품의 공급이나 부족한 수량의 보충을 요구할 수 없다.

**제10조 (담보제공)**

“을”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본 계약에 기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[ ]원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“갑”이 인정한 물건 또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. “을”은 위 담보를 제공한 이후 “갑”에게 본 계약에 기한 물품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1조(비밀준수)**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중에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고객정보, 기술정보, 생산 및 판매계획, 기타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비밀준수 의무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다.

**제12조(권리, 의무의 양도 금지)**

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사전 승락 없이는 본 계약 또는 개별주문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계약상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**제13조(계약의 해지)**

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주문서에 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그에 관한 서면통지에 의한 이행의 최고 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\_\_\_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
2. 상대방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가 신청된 경우

3. 상대방이 본 계약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
②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해지 이전 본 계약 및 개별주문서에 의한 각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**제14조(손해배상)**

각 당사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 또는 개별주문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추가계약)**

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협의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추가계약 내용 중 본 계약 내용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계약의 효력이 우선한다.

**제16조(관할의 합의)**

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“갑”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**제17조(기타)**

본 계약 및 개별주문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.

본 계약서에서 명시한 개별주문서라 함은 “갑” 과 “을”사이에서 협의된 내용을 기록한 포괄적인 문서로 대체 할 수 있다.

“갑”과 “을”은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0 . . .

갑 주소

회사명

대표이사 (인)

을 주소

회사명

대표이사 (인)